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2019-1786호

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·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재결정 · 공시합니다.

2019. 12. 31.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❋ 재결정 · 공시

1. 기 준 일 : 2019년 7월 1일 기준
2. 대상토지 :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11번지(1필지)
3. 공시사항 : 개별토지별 제곱미터 당 가격(원/㎡)
4. 공시내역

연번	소 재 지	개별공시지가(원/㎡)		비고
		결정지가	재결정지가	
1	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11번지	301,200	320,000	상향조정

※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문의 : (영종·용유) 인천 중구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 ☎ 032)760-7762, FAX 6998